

비료 불량으로 손해 발생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김시동 변호사
☎ 02-594-5200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책임의 경우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와 중간판매상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제조자 등의 고의, 과실 및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론을 개발하여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 3자에게 인적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배상능력이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과 입증의 완화를 위하여 결함 있는 유기비료를 제조한 제조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송 이전에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임 **양형**.